

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 - 15호

「대전효문화진흥원 조례」 일부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』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3월 13일

## 대전광역시의회 의장

### 대전효문화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

#### 1. 제안이유

대전효문화진흥원은 「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전국 단위의 기관으로 설립·운영되고 있으나, 기관 명칭으로 인해 대전시에 국한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인식됨으로써 전국 단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제약요인이 되어 기관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가. '대전효문화진흥원'을 '한국효문화진흥원'으로 명칭을 변경함.

나. 용어를 정비함(안 제1조 및 제2조).

## 3. 의견제출

가.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8일  
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(참조 : 복지  
환경전문위원실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
(2) 의견제출자의 성명·주소·전화번호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)

다. 의견 제출할 곳 : 우35242 /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

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실

(전화 042-270-5127, FAX 042-270-5039, E-mail : ychm11@korea.kr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컴퓨터통신, 직접방문 등

## 4. 개정 조례안 : 붙임

## 대전효문화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전효문화진흥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대전효문화진흥원 조례”를 “한국효문화진흥원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및 제2조 중 “대전효문화진흥원”을 각각 “한국효문화진흥원”으로 한다.

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대전효문화진흥원 시설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대전효문화진흥원 시설운영 조례”를 “한국효문화진흥원 시설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및 제2조 중 “대전효문화진흥원”을 각각 “한국효문화진흥원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제6호 후단 중 “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인”을 “심한 장애”로 한다.



# 관 계 법 령

##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[시행 2017. 12. 12.] [법률 제15190호, 2017. 12. 12., 일부개정]

제7조(효문화진흥원의 설치) ①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효문화진흥원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효문화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.

③ 효문화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④ 효문화진흥원의 설치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8조(효문화진흥원의 업무) 효문화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효문화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
2. 효문화 진흥에 관한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
3. 효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활동
4. 효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평가와 지원
5.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
6.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단체에 대한 지원
7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업무

제13조(민간단체 등의 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